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공무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등급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양육책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을 받은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급여 신청 절차의 개선(안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재해발생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이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장해등급 결정기준의 개선(안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

1) 척추장해 등급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척추의 장해등급을 척추의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정도와 신경장해로 인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세분화함.

2) 장해등급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외모에 관한 장해등급과 코 등의 결손에 관한 장해등급을 외모의 흉터나 결손의 정도에 따라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 등급을 세분화함.

3)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의 경중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비하여 종합장해등급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다.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의 수급권 이전 제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이 함께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던 다른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급여를 포함한 급여의 지급액은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5. ~ 11. 24., 2022. 1. 19. ~ 1.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을 “(장해등급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장해등급 구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으로 한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중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공무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청구서에”를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와”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9급제10호”를 “제9급제10호, 제12급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제12급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급제7호·제10호·제11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제10급제9호·제12호·제13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가목2) 중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
금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그 급여는 이전되는 수급권을 포함
한 급여액에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
급한다.

별표 3 제4급 제7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
족관절)”로 하고, 같은 표 제6급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7급 제8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
족관절)”로 하고, 같은 급 제12호 중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를 “극도의
흉터가”로 하며, 같은 급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8급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
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9급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급에 제17

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
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
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
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0급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
고, 같은 급에 제2호, 제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
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1급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급에 제12
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2급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급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7호(종전의 제4호) 및 제8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기형”을 “변형”으로 하고, 같은 급 제13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3급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급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3 제14급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급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4호 중 “팔”을 “두 팔”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며, 같은 급 제5호 중 “다리”를 “두 다리”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고, 같은 급 제9호 중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을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으로 하며, 같은 급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4]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8	8	8	8	8	7	6	5	4	3	2	1
8	7	7	7	7	7	6	5	4	3	2	1	1
7	6	6	6	6	6	5	5	4	3	2	1	1
6	5	5	5	5	5	4	4	4	3	2	1	1
5	4	4	4	4	4	3	3	3	2	1	1	1
4	3	3	3	3	3	2	2	2	1	1	1	1
3	2	2	2	2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종합장해등급이 그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
백히 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심하지 않은 등급으로 1
개 등급을 조정하여 종합장해등급으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u>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u> 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 ----- ----- <u>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 ----- ----- ----- ----- ----- ----- 말한다. <단서 삭제>

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중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공무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② <u>장해등급 구분</u>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u>결정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 -----.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 ----- -----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와 ----- -----.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 제3호, 제2급 제3호, 제3급 제3호, 제5급 제2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6급 제5호, 제8급 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1. ----- ----- ----- 제9급 제10호, 제12급 제15호----- 2. ----- ----- ----- 제7급 제14호, 제8급 제2호, 제9급 제17호, 제10급 제14호, 제11급 제12호, 제12급 제16호-----
② (생 략)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 ----- ----- ----- ----- ----- ----- ----- ----- ----- ----- ----- ----- -----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 제6호·제8호, 제4급 제6호, 제5급 제6호·제7호, 제6급 제6호·제7호, 제7급 제7호·제11호, 제8급 제4호·제6호·제7호, 제9급 제13호·제15호, 제10급 제7호·제10호·제11호, 제11	3. ----- ----- ----- ----- ----- ----- ----- ----- 제10급 제9호·제12호·제13호, 제11

<신 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 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그 급여는 이전되는 수급권을 포함한 급여액에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4